

## 정무직 공무원임용 인사검증시스템 소고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국민들에 의하여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국가통치철학과 국정방향 및 과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충심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각 정부조직의 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행위이다. 즉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은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소위 엽관계적 고위공무원 임용에 대한 당위적 명분이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정치적 임명이 허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엽관계적 임명의 이면에 존재하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해당분야의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그리고 고위직을 이끌어갈 만큼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가정이다. 정무직 공무원들의 임용에 대하여 가장 철저한 인사검증과 청문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아무리 자신의 고향사람들이나 정치적 후원자들을 장관직에 임명하더라도 다소의 비아냥거림과 이해당사자들과의 연계성으로 인한 논란이 있을지는 몰라도 학연, 지연 등의 이유로 시비가 붙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나치게 도덕성을 강조하여 거의 신상털기에 가까운 언론검증과 청문회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임용후보자들이 평생 쌓아온 명예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 중 약99% 정도가 인준에 성공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명박정부 기간 중 89건<sup>1)</sup>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어 임명동의안 철회 4건, 후보자 사퇴 2건, 보고서 미채택 17건으로

1) 조사된 건수에 한정되었으며 자료검색 중 전부 찾지 못하여 빠진 청문대상 직위수가 있을 수도 있음

## 이 선 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사되었다. 물론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되고서도 장관 임명이 강행된 사례도 다수이다(최준영, 2012:32; 이선우, 2013). 참고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회 사례 비교〉

한국 정운찬 총리인사청문회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인사청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병역면제의 사유와 병역회피 의혹</li><li>• 위장전입, 부동산 다운 계약서 문제</li><li>• 장남의 이중국적문제</li><li>• 공직자 재산등록의 성실성과 세금탈루 여부</li><li>• 국무총리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입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무장관과 클린턴 재단과 조화방안</li><li>• 국무부 직원의 증원필요성에 대한 입장</li><li>• 이란 핵 문제, 아프카니스탄 정책 등 국경분쟁</li><li>• 국가안보차원에서 에너지 확보방안</li><li>• 여성인권, 난민 문제 등 미국의 외교 정책</li></ul>

자료 : <http://impeter.tistory.com/1199>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국회 인사청문회의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두 개의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하나는 인사검증 및 청문회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의 제약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청와대와 국회 및 여야정당과의 긴밀한 협조여부이다. 그런데 이 둘은 별도의 과정이 아니라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순치(脣齒)의 관계에 있다. 즉 국회에서 공식적인 청문과정을 거치지 이전에 청와대,

국회, 여야정당 지도부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조용한 인사검증을 거친다면, 국회에서의 공식적인 청문과정이 요란한 신상털기식으로 운영되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사검증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이미 도덕성 부분 등 문제가 있는 공직후보자들에게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와대측에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국회청문과정을 요청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이 20일 이내로 짧고, 이미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명한 직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때문에 사전에 청와대, 국회, 여야정당지도부 간 충분한 협의가 있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 상원의 청문기간은 평균 9주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며, 심지어는 인사가 예상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1여년의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통하여 상원 인사청문회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원 인사청문과정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다. 사전협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이슈가 발견되거나 또는 백악관측에서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의지를 보이면 상원의원 중 반대하는 의원이나 반대정당 측에서는 인사청문과정에서 보류(hold), 의사진행방해(filibuster), 또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 등의 행위를 통하여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자 노력한다(최준영, 2008: 85-86).

참고로,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대상 중 국회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대상은 17개 직위이고, 국회의 선출대상이 되는 직위가 6개, 그리고 국회 소관상임청문회를 거치되 국회 본회의의 동의절차가 필요 없는, 즉 청문보고서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수가 38개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는 의회 동의대상이 1,750명이고, 청문대상은 약 7,800명이 이른다(전충렬,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비율이 2% 미만이라는 점은 그 만큼 사전검증과정을 철저히 하고, 백악관과 의회 그리고 여야지도부와의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사검증을 위한 조사과정도 2010년 9월 청와대에서 수정하여 200여 항목을 포함한 정밀자기검증서에 대한 응답을 후보자에게 요청하고, 주변 탐문, 정황증거 조사내실화 등으로 질적 검증을 강화한 후, 인사추천위에서 약식청문을 거쳐 최종후보자를 확정하여 발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을 당리당락으로 이용한다거나, 전문성 보다는 도덕성 중심의 신상털이식 청문회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사 검증과 청문과정에서의 시간제약과 여야 정당, 국회, 그리고 청와대의 사 전협조체계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사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적 제약도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7일 정도의 검증기간(약식 검증의 경우 3~4일 소요)인데 반해, 미국의 경우는 6~8주(긴급시 3주)정도의 시간여유를 갖는다(김진수·박천오, 2009, p80).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철학이다. 국회 여야의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한 인물을 청문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을 없애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